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92. 12. 14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원안 : 1992년 11월 26일 회부
 - 수정안 : 1992년 12월 4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2년 12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하보중,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문화공보실장 하장길)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 세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남구 총괄 : 58,546,579천원
 - 일반회계 55,588,379천원
 - 특별회계 2,958,200천원
- 총무위원회 소관
 - ◇ 세 입 : 46,169,004천원
 - 일반회계 45,980,304천원
 - 특별회계 188,700천원
 - ◇ 세 출 : 23,552,759천원
 - 일반회계 23,364,059천원
 - 특별회계 188,7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무상)

○ 총괄

-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동사무소등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93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의 경우 남구 전체 58,546,579천원의 78.9%에 해당하는 46,169,004천원, 세출은 40.2%인 23,552,759천원을 차지하고 있음.
- ◊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92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세입은 4.9%인 2,168,89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1.5%인 2,426,811천원이 증가하였음.
- ◊ 그러나 남구 전체를 종합해 보면, 92년 최종 예산보다 약 7.7%인 4,901,885천원이 감소한 예산임.

○ 세입

- ◊ 이와 같이 전체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5,429,220천원이었던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에는 과목존치만 되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 이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 운용의 비효율화로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데 반해 금년에는 이미 나타나 있는 예상 불용액을 감안해 볼때 예산 편성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과 예상의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는듯한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 하겠음.
- ◊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 수입에 있어 금년에 10,265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내년 수입을 잡지 않는 이유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 과년도 수입이 479,000천원으로 금년 대비 93%가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금년도의 체납액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음.
- ◆ 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것은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회계 종류가 달라져 특별회계 부분의 수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임.

○ 세 출

- ◆ 남구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충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이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충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수성 때문이며 증가된 주 요인이 인건비 상승에 있다 하겠음.
- ◆ 그러나 기획관리, 관서당 경비의 경우 기획감사실은 6,220천원이 증가 한데 반해 문화공보실의 경우 오히려 575천원이 감소한 것은 부서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하겠으며,
- ◆ 기획관리, 기본경상비의 경우 기타수당 증가는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심사위원의 수당이 신설된 결과이며,
- ◆ 같은 세항의 수용비및 수수료는 각종 인쇄물 단가 인상과 신종 인쇄물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나 업무보고 등 인쇄물 단가가 평균 5천원이상씩 인상 된 것은 과다한 인상을이라 하겠음.
- ◆ 또한 같은 세항의 기타수당이 11,180천원 증가된 것은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관련된 필수 과목이라 할 수는 있으나 92년 예산 7,820천원중 3,900천원만 집행하고 3,920천원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된 공무원의 교육등을 소홀히 한 결과로 지적되므로 예산의 증액 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 ◇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중 특별판공비의 증가는 구정 홍보의 다양화 추진에 필요한 경비라 하겠으나 예산을 관리하는 특정 부서에서만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보상금의 경우 오록도상 시상금이 45% 증가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 되는지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물품 구입비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사무 장비 구입비로 장비의 현대화에도 도움 을 주는 필요한 경비라 하겠음.
- ◇ 법무관리,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중 소송제기 인지대가 항소, 상소의 경우 92년에 비해 전당 단가가 10배가 넘는 200-300천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또한 50% 증가된 것은 과다한 인상액이므로 직관적 산출기초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음.
- ◇ 천산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와 시설비는 행정 천산화로 공무원의 천산 처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천산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천산시설 개선등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라 여겨지며,
- ◇ 행정 자료실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중 각종 도서 구입비는 단가가 금년에 비해 100-150% 인상된 금액이므로 단가 산출에서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중 가로기꽃이 보수 및 설치비 는 92년도에 7,200천원이 책정되었음에도 또다시 9,000천원이 재편성된 것은 매년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성질임에 비추어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할 것이며 단가 또한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라 하겠으며,
- ◇ 동 세항의 시우회 사무실 임차료는 신설과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 ◇ 인사고시관리, 보상금 250,000천원은 일용인부 회직금과 공상치료비 등 필수적인 경비이나 92년보다 50%이상 증가되었으므로 과다한 불용액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 문서관리, 시설비의 흐적부 진열장 제작도 92년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이며,
- ◇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 증가는 전산관리와 관련된 경비로 각종 재료 구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필수적 경비로 보아짐.
- ◇ 일선행정조직 운영중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은 과목변동으로 여겨지나 구체적 산출 기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또한 동세향의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1일 구청 시찰 경비가 반영되어 증가되었으나 1일 구청 시찰 대상자는 자율 참여보다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인원 동원 성격의 타율적 참여 성격이 강하므로 회수를 줄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꼭 필요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리라 판단됨.
- ◇ 회계 관리의 기타 수당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92년도에 의회사무국에 편성되었던 것이 재무과 소관으로 부서가 변경 편성된 것이며,
- ◇ 문예진흥, 수용비 및 수수료 15,445천원은 금년 신설된 남구 문화 예술제와 관련된 경비로 문예진흥에 필요한 경비이나, 동세향의 보상금 중 명승지 풍물화 제작 구입비는 1점당 1,000천원이라는 고가이므로 무분별하게 제작하는 것 보다는 남구의 홍보 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 풍물화는 제외시켜 종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문예행사, 보상금의 경우 92년도에 29,800천원의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은 9,800천원밖에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 ◇ 동 목중 동단위 민속놀이 지원금 통별 100천원은 수년전부터 통일한 액수로 동단위 행사에 사실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 문화 및 체육비는 전체적으로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나 갈수록 구민들이 체력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 동소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나 자산취득비, 시설비등에 편성된 민원 안내판, 관내도, 현황판 설치등의 경비가 500 천원에서 1,500천원까지 다양한 것은 각각 다른 등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품질의 격차가 심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통일된 모양과 규격으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동사무소를 제외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보비는 총 274,569천원으로 92년 최종 예산 135,764천원보다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각종 시책의 양적 증가와 다양성등에 의해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내년 예산이 92년 대비 급격 재정임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이 높다 할 것임.

4. 질의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임종하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마을단체 보조금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보조금이 올해에는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 내년 예산 풀경비 2억 2천만원은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마을단체 보조금은 금년도 예산도 별도 편성되어 있었고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은 별도 편성없이 풀경비에서 보조해주었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 지침상 지정 보조 단체로 되어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음. · 지정 보조 단체를 제외하고 전상자회, 상의용사회, 경우회, 대한 미망인회등 구청 업무 수행에 실제 보조를 요청하는 단체가 수십개에 달하고 있고 지정 보조 단체에 더 보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 보조함.
배종환 위원	총무과장 허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는 당시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구비에서 일부 지원하여 운영도록 되어 있었는데 93년도 예산에 4,500만 원의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운영비가 얼마이며 시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에는 운영비 8천만원중 시비가 4천만원이 지원되고 구비에서 4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차량구입비, 도서구입비 인건비등 경상경비로 사용 되었음. · 내년부터는 모두 구비로 보조를 해야함.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임종하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도상 시상관계에 상폐하고 시상금하고 목이 분리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패 제작대금은 성질상 수용비 수수료 목에 계상하여야 하며 시상금은 보조금 목에 편성하여야 함.
배종환 위원	총무과장 허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불링팀 예산이 1억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 실태는? · 우리 위원들이 불링 선수들이 연습하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불링팀의 구성을 보면, 코치 1명, 선수 6명이며 훈련은 남구관내 불링장 및 해운대 등지에서 연습을 함. 성과로는 전국 체육대회 우승을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 남구의 명예를 높이고 있음. 또한 각구에서 체육팀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그리고 불링팀 운영으로 시비 보조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음. · 지금은 전국대회 참석 관계로 어렵고 차후에 가능함.
주만보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감사실 소관의 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와 특별판공비가 금년 보다 45% 증가 편성된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업무량이나 올해 집행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산출한 것임.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관리 수용비 수수로 소송제기 예산이 금년 보다 50% 증가된데 대한 사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소송 전수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도 30여건이 됨.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인지 대등도 자연히 증가됨.
배종환 위원	충무과장 허병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주민들이 수도물을 불신하여 아침마다 식수통을 들고 식수를 구하러 다니는데 식수기빌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공원을 조성할때 식수개발도 하는데 금년에는 두 군데를 개발하였음. 내년에는 식수개발이라해서 특별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비로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6. 수정안 심사 내용

가. 발의자 : 배종환 위원

나. 찬성자 : 최경익 위원

다. 제안 이유

0. 일부 과목 불요불급한 부분 발간
0. 필수적 경비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도출

라. 주요 골자

0.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 요구액은 세마을 소득 특별회계

188,700천원을 포함한 23,552,759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불요불급분

99,55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함.

0.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

※ 수정안 총괄 및 목별 증감 내역 : 별첨

마. 질의 답변 : 없음

바. 토론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위원회)

0.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지방자치 단체 제출액	삭감	증액	금 액 증 인 액	비고
기	23,552,759	99,550	-	23,453,209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
일반회계	23,364,059	99,550	-	23,264,059	
특별회계	188,700	-	-	188,700	
의료보호 기금					
영세민 생활					
새마을 소득	188,700			188,700	

0. 목별증정내역

(단위:천원)

장	관	항	세	양	세	내	양	목	자	방	자	지	부	정	정	수	정	수	정	여	유	와	내	액		
계																										
2	2100	2110	기획 관리	경상 사업비	물품 구입 비	426,580	40,000																			
																									386,580	
																									행정장비 구입단가 과다 책정	
																									0	
"	"	2130	행정 자료 실 운영	경상 사업비	기타 수당	2,000	2,000																		행정사례발표회 및 독후강 경진대회는 형식적 행사로 불필요 전액 삭제	
																									87,530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부수조정 (1710부→1410부)	
"	2200	2210	사무 관리	경상 사업비	"	22,680	3,000																		가로가 꽃이 보수 및 설치는 92년도에 일제정비 했는데도 93년도 예산을 과다 책정	

(단위:천원)

과 목						지방자치 단체재출 예산액	수 장 앤		수 정 예 산 액	수정의유 와 내 액
장	관	항	세양	세세양	목		금 액	증 액		
2	2200	2210	서무	경 상	정보	193,000	12,000		181,000	92년도에 비해 구정 업무수행 활동 정보비 과다 책정
			관리	사업비	비					
		2220	민원	경 상	수용	179,832	1,800		178,032	민원실내 수족관 기 철거로 인한 관리비 불요
			업무	사업비	비및 수수 료					
	2300	2330	물자	경 상	물품	117,000	13,000		104,000	소형화물차량 단가 과다 책정
			관리	사업비	구입 비					
7	7110	7110	영선	경 상	시설	11,353	500		10,853	보일러 청관제 약품 대금 과다 책정
			관리	사업비	장비 유지 지					
			민방	경 상	기타	28,200	4,000		24,200	민방의 소양교육 강사수당 과다 책정
			위	사업비	수당					
			교육							
			훈련							

(단위:천원)